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17

발의연월일: 2022. 11. 29.

발 의 자:최연숙・권은희・金炳旭

서정숙 • 윤두현 • 이인선

이채익 • 이태규 • 정경희

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기 쉬운 시설 내부에 대부 분 설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응급상황이 토요일 밤에 발생하였을 때 그 인근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및제62조제1항).

법률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갖추어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의2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응급장비 구비에 관한 적용례) 제47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u>갖추어야</u> 한다.	<u>24시간 사용 가능</u>
	한 장소에 갖추어야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	3의2
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	
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를 갖추지 <u>아니한</u> 자	<u>아니하거나 24시간</u>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지
	<u>아니한</u>
3의3.·3의4. (생 략)	3의3.·3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
	<u> </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